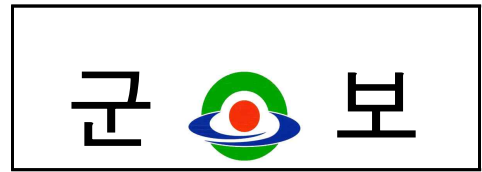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59호 2023. 7. 20.(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예천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3-1014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담당관(전화 650-6065)

예천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을 인용하는 조문이 포함된 「예천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현재의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잘못된 인용조문 변경(안 제4조 및 제6조)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 → 제18조로 변경

3. 개정규칙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kjy1907@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행정지원실

3) 팩스 : 054-650-60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행정지원실(전화 : 054-650-68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과·단·소·읍면”을 “본청 실·과·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생략)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과·단·소·읍면(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③·④ (생략)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본청 실·과·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③·④ (현행과 같음)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생략)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생략)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 ----- ----- ----- ----- ----- ----- ----- ----- -----.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	제6조(출장의 절차) ①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 ----- ----- ----- ----- -----

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 -----

-----.

② (현행과 같음)